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입주자모집공고

%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안내는 분양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chs)에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견본주택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43-269-4535)을 운영 중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약자 본인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u>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8.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청주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8.)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해외체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국내 거주로 인정하는 해외체류 예외 규정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혼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빈	공급
2344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형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0	0	0	0	0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 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0	0	X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 독일이라는 구구국에게 다음에게 다시되는 전쟁이 되는 전쟁이 되었다. 중심에는 다시에 다음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는 전쟁이 되었다. 중심에게 다음에게 되었다. 중심에게 다음에게 되었다. 중심에게 다음에게 되었다. 중심에게 되었다. 중심에게 다음에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는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chs)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단,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없습니다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행위자(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처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위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 및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계약 시 거래당사자(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계약자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최종 매수자까지)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재금액, 납부세액 및 납부방법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 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4.03.04.(월)	2024.03.05.(화)	2024.03.06.(수)	2024.03.13.(수)	2024.03.14.(목) ~ 2024.03.19.(화)	2024.03.24.(일) ~ 2024.03.27.(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 - 8141호(2024.02.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5-8번지 일대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35층 26개동 총 2,330세대(조합원 517세대, 임대 118세대 및 보류지 20세대 제외) 중 일반분양 1,675세대

[특별공급 775세대(기관추천 141세대, 다자녀가구 78세대, 신혼부부 288세대, 노부모부양 45세대, 생애최초 223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7년 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장소

(단위: m², 세대

ᅎᄗ				OFAI	3	주택공급면	적	기타공용		III EII EE	太ココ			특별공급	급 세대수				: m, 제대) 최하층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1	59.8400A	59A	59.8400	20.1300	79.9700	37.7600	117.7300	35.3368	59	3	2	10	1	8	24	35	5
		2	59.8400B	59B	59.8400	19.8000	79.6400	37.7600	117.4000	35.1910	125	11	6	22	3	17	59	66	8
		3	59.8300C	59C	59.8300	20.0100	79.8400	37.7500	117.5900	35.2783	105	10	5	18	3	14	50	55	6
		4	59.7500D	59D	59.7500	20.4300	80.1800	37.7100	117.8900	35.4292	46	2	2	8	1	6	19	27	3
		5	79.5900A	79A	79.5900	25.4700	105.0600	50.2300	155.2900	46.4210	48	2	2	8	1	6	19	29	4
민		6	79.7400B	79B	79.7400	25.1700	104.9100	50.3200	155.2300	46.3569	711	70	35	127	21	99	352	359	36
영 주	2024000058	7	79.4600C	79C	79.4600	26.7000	106.1600	50.1500	156.3100	46.9070	78	5	3	14	2	10	34	44	4
· 택		8	79.5200D	79D	79.5200	25.9200	105.4400	50.1800	155.6200	46.5906	136	12	6	24	4	19	65	71	7
		9	84.9600A	84A	84.9600	26.9400	111.9000	53.6200	165.5200	49.4419	93	5	4	16	2	13	40	53	13
		10	84.9600B	84B	84.9600	28.1700	113.1300	53.6200	166.7500	49.9854	226	21	11	40	6	31	109	117	11
		11	84.9900C	84C	84.9900	27.5400	112.5300	53.6400	166.1700	49.7234	7	-	-	1	-	-	1	6	2
		12	114.7700	114	114.7700	35.6500	150.4200	72.4400	222.8600	66.4628	41	-	2	-	1	-	3	38	3
					합기	4			1,675	141	78	288	45	223	775	900	10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0.3025 또는 m²÷3.3058)

-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까지 표기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면적 합산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주차장, 전기/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m²)

주택형(m²)	59.8400A	59.8400B	59.8300C	59.7500D	79.5900A	79.7400B	79.4600C	79.5200D	84.9600A	84.9600B	84.9900C	114.7700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59A	59B	59C	59D	79A	79B	79C	79D	84A	84B	84C	114

※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주택형별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물, 제작물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상기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공급	금액		계약금	1 (10%)			중도금	160%)			잔금(30%)
약식	동·호구분	층구분	세대수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ㅁ(30%)
표기	0 12	0,2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분양가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4.08.20	25.01.20	25.07.21	26.01.20	26.07.20	27.01.20	입주지정일
		1층	3	99,417,500	199,582,500	-	299,000,000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2층	5	105,402,500	211,597,500	-	317,000,000	10,000,000	2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95,100,000
	101동6호	3층	5	107,730,000	216,270,000	-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F0.4	10180호 103동2호 201동1호	4층	5	109,060,000	218,940,000	-	328,000,000	10,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59A	202동6호	5-9층	16	110,057,500	220,942,500	-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204동5호	10-19층	23	111,055,000	222,945,000	-	334,000,000	10,000,000	2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20-29층	1	112,385,000	225,615,000	-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30층이상	1	113,382,500	227,617,500	-	341,000,000	10,000,000	2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102,300,000
		1층	6	99,085,000	198,915,000	-	298,000,000	10,000,000	1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2층	8	105,070,000	210,930,000	-	316,000,000	10,000,000	2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94,800,000
	103동1호 116동1호	3층	8	107,397,500	215,602,500	-	323,000,000	10,000,000	2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6,900,000
59B	201동2호 202동5호	4층	8	108,727,500	218,272,500	-	327,000,000	10,000,000	2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98,100,000
396	205동1호,4호	5-9층	37	109,725,000	220,275,000	-	330,000,000	10,000,000	2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99,000,000
	206동5호 207동1호	10-19층	52	110,722,500	222,277,500	-	333,000,000	10,000,000	2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99,900,000
		20-29층	5	112,052,500	224,947,500	-	337,000,000	10,000,000	2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101,100,000
		30층이상	1	112,717,500	226,282,500	-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2층	1	104 072 500	208,927,500	_	313,000,000	10,000,000	2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3,900,000
		-	1					, ,								
		3층		, ,	213,600,000	-	320,000,000	10,000,000	2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000,000
		4층	1	, ,	216,270,000	-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202동4호	5-9층	5	, , , , , , , , , , , , , , , , , , , ,	218,272,500	-	327,000,000	10,000,000	2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98,100,000
		10-19층	10		222,945,000	-	334,000,000	10,000,000	2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20-29층	4	112,385,000	, ,	-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59C —		30층이상	1	113,382,500	227,617,500	-	341,000,000	10,000,000	2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102,300,000
		1층	2	98,752,500	198,247,500	-	297,000,000	10,000,000	1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89,100,000
		2층	5	104,072,500	208,927,500	-	313,000,000	10,000,000	2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3,900,000
	111동2호 201동3호	3층	5	106,400,000	213,600,000	-	320,000,000	10,000,000	2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000,000
	20183도 204동4호 205동2호	4층	5	107,730,000	216,270,000	-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207동2호	5-9층	25	108,727,500	218,272,500	-	327,000,000	10,000,000	2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98,100,000
		10-19층	35	109,725,000	220,275,000	-	330,000,000	10,000,000	2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99,000,000
		20-29층	5	111,055,000	222,945,000	-	334,000,000	10,000,000	2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1층	2	99,417,500	199,582,500	-	299,000,000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2층	3	105,735,000	212,265,000	-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20152	3층	3	108,062,500	216,937,500	-	325,000,000	10,000,000	2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97,500,000
59D	204동3호 205동3호	4층	3	109,392,500	219,607,500	-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207동3호	5-9층	15	110,390,000	221,610,000	-	332,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99,600,000
		10-19층	19	111,387,500	223,612,500	-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20-29층	1	112,717,500	226,282,500	-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1층	4	132,335,000	265,665,000	-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2층	4	138,652,500	278,347,500	-	417,000,000	10,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105동2호 107동2호	3층	4	141,645,000	284,355,000	-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79A	115동1호	4층	4	143,307,500	287,692,5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206동6호	5-9층	20	144,637,500	290,362,5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0-19층	12	145,967,500	293,032,500	-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층	1	132,667,500	266,332,500	-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3층	1	135,660,000	272,340,000	-	408,000,000	10,000,000	3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4층	1	137,322,500	275,677,500	-	413,000,000	10,000,000	3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23,900,000
	113동3호	5-9층	5	138,652,500	278,347,500	-	417,000,000	10,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10-19층	10	141,645,000	284,355,000	-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20-29층	10	143,307,500	287,692,5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30층이상	6	144,637,500	290,362,5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층	2	131,005,000	262,995,000	-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2층	2	138,320,000	277,680,000	-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3층	2	141,312,500	283,687,500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11동1호 202동3호	4층	2	142,975,000	287,025,000	-	430,000,000	1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5-9층	10	144,637,500	290,362,5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0-19층	18	147,297,500	295,702,500	-	443,000,000	10,000,000	3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79B		30층이상	1	150,290,000	301,710,000	-	452,000,000	10,000,000	3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101동2호,5호 102동2호 104동1호,2호,3호	1층	24	131,005,000	262,995,000	-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105동1호 106동2호	2층	32	138,320,000	277,680,000	-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107동1호 109동1호,2호	3층	33	141,312,500	283,687,500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11동3호,4호 113동1호,2호 114동1호,2호,4호	4층	33	142,975,000	287,025,000	-	430,000,000	1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115동2호,3호 116동2호	5-9층	157	144,637,500	290,362,5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17동4호 201동4호,5호	10-19층	252	145,635,000	292,365,000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03동4호,5호,6호 204동2호 205동5호	20-29층	94	147,297,500	295,702,500	-	443,000,000	10,000,000	3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206동2호,3호 207동4호,5호	30층이상	15	148,627,500	298,372,500	-	447,000,000	10,000,000	3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34,100,000
		2층	3	138,652,500	278,347,500	-	417,000,000	10,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3층	4	141,645,000	284,355,000	-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106동1호	4층	4	143,307,500	287,692,5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79C	201동6호 204동1호	5-9층	19	144,637,500	290,362,5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206동1호	10-19층	30	145,967,500	293,032,500	-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0-29층	17	147,630,000	296,370,000	-	444,000,000	10,000,000	3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30층이상	1	148,960,000	299,040,000	-	448,000,000	10,000,000	3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1층	3	131,337,500	263,662,500	-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101동1호	2층	7	137,655,000	276,345,000	-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102동1호 114동3호	3층	7	140,647,500	282,352,500	-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79D	115동4호	4층	7	142,310,000	285,690,000	-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117동3호 203동3호	5-9층	35	143,640,000	288,360,000	-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206동4호	10-19층	55	144,970,000	291,030,000	-	436,000,000	10,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20-29층	22	146,632,500	294,367,500	-	441,000,000	10,000,000	3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101동3호 102동3호	1층	9	144,305,000	289,695,000	-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106동3호 108동1호	2층	13	151,952,500	305,047,500	-	457,000,000	10,000,000	3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84A	110동1호,3호 112동3호	3층	13	155,277,500	311,722,500	-	467,000,000	10,000,000	3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04A	113동5호,6호	4층	13	156,940,000	315,060,000	-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117동2호 202동2호	5-9층	33	158,602,500	318,397,500	-	477,000,000	10,000,000	3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203동2호 208동2호	10-19층	12	159,932,500	321,067,500	-	481,000,000	10,000,000	3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1층	1	142,642,500	286,357,500	-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2층	1	150,622,500	302,377,500	-	453,000,000	10,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3층	1	153,615,000	308,385,000	-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113동4호	4층	1	155,610,000	312,390,000	-	468,000,000	10,000,000	3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40,400,000
		5-9층	5	157,272,500	315,727,500	-	473,000,000	10,000,000	3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10-19층	4	160,265,000	321,735,000	-	482,000,000	10,000,000	3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30층이상	1	162,260,000	325,740,000	-	488,000,000	10,000,000	3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84B		1층	3	142,642,500	286,357,500	-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046	101동4호 102동4호	2층	9	150,622,500	302,377,500	-	453,000,000	10,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104동4호	3층	10	153,615,000	308,385,000	-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106동4호 108동2호	4층	10	155,610,000	312,390,000	-	468,000,000	10,000,000	3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40,400,000
	110동2호 112동2호	5-9층	50	157,272,500	315,727,500	-	473,000,000	10,000,000	3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117동1호 202동1호	10-19층	75	158,270,000	317,730,000	-	476,000,000	10,000,000	3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42,800,000
	208동1호	20-29층	46	160,265,000	321,735,000	-	482,000,000	10,000,000	3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30층이상	9	161,595,000	324,405,000	-	486,000,000	10,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1층	1	144,970,000	291,030,000	-	436,000,000	10,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046	116동3호,5호	2층	2	152,950,000	307,050,000	-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84C	110年3天,3文	3층	2	155,942,500	313,057,500	-	469,000,000	10,000,000	3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4층	2	157,937,500	317,062,500	-	475,000,000	10,000,000	3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1층	3	178,604,100	358,541,727	35,854,173	573,000,000	10,000,000	4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2층	3	188,578,500	378,565,000	37,856,50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112동1호	3층	3	192,318,900	386,073,727	38,607,373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114	112등1호 116동4호 203동1호	4층	3	194,812,500	391,079,545	39,107,955	625,000,000	10,000,000	5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200등1포	5-9층	14	196,682,700	394,833,909	39,483,391	631,000,000	10,000,000	5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189,300,000
		10-19층	14	200,734,800	402,968,364	40,296,836	644,000,000	10,000,000	5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193,200,000
		30층이상	1	204,475,200	410,477,091	41,047,709	656,000,000	10,000,000	5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196,800,000

-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인지세 제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또는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 및 피트가 있는 동은 그 해당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ㆍ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u>(단위:세대)</u>

													(=11 - 7 -)	
구분		59A	59B	59C	59D	79A	79B	79C	79D	84A	84B	84C	114	합계
	장애인	1	3	3	1	1	21	2	4	2	6	_	-	44
	국가유공자 등	1	2	2	-	-	15	1	2	1	4	_	-	28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 제대 군인	-	1	1	ı	-	7	-	1	-	2	_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1	1	_	-	7	-	1	-	2	_	-	12
	중소기업 근로자	1	4	3	1	1	20	2	4	2	7	_	-	45
다자녀가-	구 특별공급	2	6	5	2	2	35	3	6	4	11	-	2	78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22	18	8	8	127	14	24	16	40	1	-	28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3	3	1	1	21	2	4	2	6	-	1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8	17	14	6	6	99	10	19	13	31	-	-	223
ģ	24	59	50	19	19	352	34	65	40	109	1	3	77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속한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 전까지 민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사업주체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신청을 완료하고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2023.11.1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무주택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소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청약자격요건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14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 여부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애인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영국중앙 골프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구시시국에 기입어 어 매당 표신을 갖 둔 문	중소기업 근로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대상세대 : 총 7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 1)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2)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혼 및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①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자녀 포함)가 많은 자
-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9.97.	등 배급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지난(데이 이어의 저희지난 교회는 이즈지다지고그의 함께 마셔너지(데40개 미미)의 거이미 교회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4명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		미성년 자녀 3명	30	(× 102 1 1 222 3 1 32== 2)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			
(2)	15	자녀 중 영유아 1명	5	S#에(데에, 입장에, 단근자리 보급)는 입투자보답장보고 전세 단V세 라면난 자리면 8부			
		없음	0				
세대구성	_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3) *중복 선택 불가	5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07 27 27		해당 없음	0				
		10년 이상	20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무주택기간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있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4)	20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1년 미만	0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을 말하며,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자로 봄)로서 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5)	15	1년 이상 ~ 5년 미만	5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			
		1년 미만	0				
입주자저축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6)	3	10년 미만	0	최초 가입일 기준 산정 (※인터넷 청약 시 청약통장 정보 확인을 통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며 직접 선택은 불가)			
계	100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자녀수로 인정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 시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계속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3

- 1)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2)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8.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3)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4) 유의사항: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는 인정 불가),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 공급순서: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우선공급 :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② 일반공급 : 대상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③ 남은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2)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 2순위 순으로 공급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無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계속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신혼부부)
- 3)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 1순위 또는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
 -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 자녀 포함, 이하 같음)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4)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u>Θ</u> Επδ		ТЕ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소득	(기준소득, 50%) 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구분	기준 구분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추	트첨제,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유의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입대확인서(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ㆍ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전 '매출액 합계-매입액 합계')
- ※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서류발급이 불가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되오니, 청약신청자는 본인의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 이후에 청약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산 보유기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초과 대상)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 보유기준 세부 내역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구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건축물	T¾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주택 외 : 위택스 > 지병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입 - 「농지법」제2조제1호어 - 「초지법」제2조제1호어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찬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년 년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한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증하는 경우	etax.go.kr 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대상세대 : 총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 공급순서 :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4% 범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상세대 : 총 2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3) 소득세 납부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강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에 해당

4-1)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8.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4-2)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5)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 공급순서: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우선공급 :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 ② 일반공급 : 대상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③ 남은주택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2)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자세한 소득세납부 확인(입증)서류 안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구분(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납부내역으로 인정합니다.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u>ο</u> μπ δ	⊤世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기준 구분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추첨제 (30%)	101 717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타 유의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입대확인서(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 국민연금보험 가입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전 '매출액 합계-매입액 합계')
- ※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서류발급이 불가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되오니, 청약신청자는 본인의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 이후에 청약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위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초과 대상)' 「참고」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순위) 청약자격과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신청자격
	전용 60㎡이하	•전용면적 60m'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전용 60m²초과 85m²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전용 85m² 초과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전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계존속
② 부양가족의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인정기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무주택세대에 한함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 - 주민등록표등본 │ - /베ㅇㄲ ㅂ긔베뎄 ㅣ 베ㅇㄲ이 ᄌ미드로프드ㅂ 기조교게즈며ㅂ ㅊ기 펜츠╮
① 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 기득단계등당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제외)
② T6/15T		2명	15	6명 이상	35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필요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3명	20			(1) 단10세 이상 전3세 되는 : 사리의 본단단세상 8시 (2) 만30세 이상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 입주자 저축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 이기이어 (단역자 이기 설렘 설이 세단)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저	0.4	7년 이상 ~ 8년 미만	9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의2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②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등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입주자선정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ЕНГ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2024.03.04.(월)	'청약Home'인터넷: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3.04.(설)	견본주택 : 10:00~14:00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견본주택 청약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번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1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2024.03.05.(화) 09:00~17:30 2순위 2024.03.06.(수)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www.applyhome.co.kr
일반중합	2순위			- 현디첫 영국 (FC 포는 프마트폰)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단,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청주시에 거주 중인 신청자이며, 청주시 외 거주 신청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u>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u>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단, 철거민 및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 또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60㎡ 소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입주 보정 • 2순위 : 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입주자 관련안내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 시 기재한 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주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 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ㆍ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ॱ┃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시 : 2024.03.13.(수)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기간 : 2024.03.14.(목) ~ 2024.03.19.(화)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제출장소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번지)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chs)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니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접수 건수 과밀로 인한 서류검토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기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한하며,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또는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 2024.03.13.(수) ~ 2024.03.22.(금) (10일간)
인터	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 (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 (10일간)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 1 1-1-	제공일시	· 2024.03.1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서류	 루유형		,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공통서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0	복무확인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단신부임)		О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 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직계비속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0	한부모가족증명서	석세미속 청약자	• 연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대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출산 이행 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_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출산 이행 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노부모 부양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ねいけ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생애최초	0		소득 증빙 서류	전약사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세대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0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十八八冊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0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받은자	0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제출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공통서류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 국가유공자 등 제외 O 복무확인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사건에 가격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가전에 가격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가격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가전에 가격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가격자 가격으로 청약한 경우 가전에 가격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및 주민등록변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 전세피해자 박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가수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자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가 사본 기본 기관 및 기관소소 해외주제와 및 추자자의 경우 및 파건 및 추자명리보다	경우 * 발급 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하인 경우에만 해당 통지서 사본
O 성약동상순위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제외	경우 * 발급 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하인 경우에만 해당 통지서 사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자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사본	" 발급 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하인 경우에만 해당 통지서 사본
O 전세피해자 박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세대원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자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사본	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하인 경우에만 해당 F지서 사본
O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및 성약자 및 세대원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1)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자 (3)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람 사본	하인 경우에만 해당 5지서 사본
그리카이 이 기계시스 웨이즈테이 이 스자비에 걸어 . 피커 미 스자메라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²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	
(단신부임)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성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병기로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나무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 있을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분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경우	ㅏ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주가서류 (가점제, 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외 (이 변경 전) 전 (이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	차기 위한 경우
지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루 중인 경우
제3자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청 시	0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0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0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방우 받은자	0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Вол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해당 직장/세무서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자 영 업 자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이전)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 직인날인)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가 아닐 경우 모두 작성)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Ⅵ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4.03.24.(일) ~ 2024.03.27.(수) [4일간]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1차 (최초 계약시)	562166-86-152075	신한은행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포현네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선언단병	사학3구학구학세계들당미사합으합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 140-014-332515 / 예금주 :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0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6억 초과주택에 한함)
본인 계약 시	0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정부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0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신청시	0		위임장	(청약신청자)	• 견본주택 비치
추가사항	0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ㆍ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③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3) 위축지역 : 3개월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동산 거래 및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계약 시 거래당사자(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한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계약자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최종 매수자까지)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재금액, 납부세액 및 납부방법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 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중도금) 범위 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금융기관 등의 관련법규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의 관련법규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개시일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매월 발생한 이자를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관계(공급금액, 연체료 등)를 모두 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계약자를 대신해 사업주체가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계약자는 입주 시 잔금과 함께 계약자를 대신해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납부 완료, 입주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직접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11 - =/ 1	1 1 1 1 2/
구	분	59A	59B	59C	59D	79A	79B	79C	79D	84A	84B	84C	114
발코니 확	장 공사비	13,100,000	9,300,000	10,700,000	9,100,000	13,900,000	10,900,000	13,100,000	12,500,000	14,700,000	14,700,000	16,400,000	17,200,000
계약금 (10%)	계약시	1,310,000	930,000	1,070,000	910,000	1,390,000	1,090,000	1,310,000	1,250,000	1,470,000	1,470,000	1,640,000	1,720,000
중도금 (10%)	2024.10.15	1,310,000	930,000	1,070,000	910,000	1,390,000	1,090,000	1,310,000	1,250,000	1,470,000	1,470,000	1,640,000	1,720,000
잔금 (80%)	입주지정일	10,480,000	7,440,000	8,560,000	7,280,000	11,120,000	8,720,000	10,480,000	10,000,000	11,760,000	11,760,000	13,120,000	13,76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 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최초 계약시)	562166-86-171073	ᆔᄾ	현대기선(조)	
글고니 확성 중사미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신한은행	현대건설(주)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 140-014-332643 / 예금주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약식표기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4.10.15	입주지정일	
	59A·B·C·D	거실+침실1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LG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79A·B·C·D	거실+침실1+주방	4,730,000	473,000	473,000	3,784,000	
	84A·B·C	거실+침실1+주방	5,060,000	506,000	506,000	4,048,000	
	114	거실+침실1+주방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LG시스템 에어컨	59A·B·C·D	거실+침실1	4,230,000	423,000	423,000	3,384,000	
(공기청정형)	79A·B·C·D	거실+침실1+주방	5,630,000	563,000	563,000	4,504,000	

	84A·B·C	거실+침실1+주방	5,960,000	596,000	596,000	4,768,000	
	114	거실+침실1+주방	6,620,000	662,000	662,000	5,296,000	
	59A·B·C·D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10,000	671,000	671,000	5,368,000	
LG시스템 에어컨	79A·B·C·D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8,690,000	869,000	869,000	6,952,000	
(일반형)	84A-B-C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9,570,000	957,000	957,000	7,656,000	
	114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10,560,000	1,056,000	1,056,000	8,448,000	
	59A·B·C·D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910,000	791,000	791,000	6,328,000	
LG시스템 에어컨	79A·B·C·D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10,190,000	1,019,000	1,019,000	8,152,000	
(공기청정형)	84A-B-C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11,370,000	1,137,000	1,137,000	9,096,000	
	114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12,360,000	1,236,000	1,236,000	9,888,000	

(2) 일반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4.10.15	입주지정일	
3구 인덕션 (IHR-B3200)	전 타입	480,000	48,000	48,000	384,000	
BI 오븐 (MZ385EBT)	전 타입	400,000	40,000	40,000	320,000	
LG 오브제(냉장+냉동+김치냉장고)+키큰장	전 타입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삼성 비스포크 (냉장+냉동+김치냉장고)+키큰장	전 타입	5,540,000	554,000	554,000	4,432,000	
식기세척기 DWA-9106B	전 타입	850,000	85,000	85,000	680,000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 천장형 에어샤워	전 타입	1,010,000	101,000	101,000	808,000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84A·B·C, 114	780,000	78,000	78,000	624,000	
청정환기 시스템 (경동나비엔-전열교환기/룸컨트롤러/에어모니터)	전 타입	1,570,000	157,000	157,000	1,256,000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 플러스 (경동나비엔-전열교환기/룸컨트롤러/에어모니터/ 렌지후드)	전 타입	2,490,000	249,000	249,000	1,992,000	

(3) 가구, 마감재, 평면선택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적용실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古古	역 경 본	리 국 프 기	<u> </u>	계약 시	2024.10.15	입주지정일	미끄
현관중문 (화이트 사틴유리)	현관	59A·B·C·D, 79A·B·C·D, 84A·B, 114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현관중문 (브론즈 유리)	현관	59A·B·C·D, 79A·B·C·D, 84A·B, 114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현관중문 (화이트 사틴유리) + 일반가구 복도장	현관	84C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현관중문 (브론즈 유리) + 일반가구 복도장	현관	84C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FOA	000,000	00.000	00.000	C 40 000	
	_	59A	800,000	80,000	80,000	640,000	
		59B	800,000	80,000	80,000	640,000	
		59C	800,000	80,000	80,000	640,000	
		59D	800,000	80,000	80,000	640,000	
현관 마감재 특화형		79A	800,000	80,000	80,000	640,000	
(현관 시트패널 + 가구 특수 PET + 하부조명	현관	79B	800,000	80,000	80,000	640,000	
+ 가구 브론즈경)		79C	800,000	80,000	80,000	640,000	
		79D	800,000	80,000	80,000	640,000	
		84A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84B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114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현관 마감재 특화형 (현관 시트패널 + 가구 특수 PET + 가구 브 론즈경)	현관	84C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59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59B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59C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59D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79A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바닥마감	침실(헤링본 강마루)	79B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거실/주방/복도 포세린 타일 + 침실 강마루	거실+주방+복도	79C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헤링본)	(포세린타일)	79D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	84A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	84B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	84C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114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바닥마감 선택제		114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포세린타일+헤링본마루)_알파룸 침실형 (알 파룸 포세린 타일 → 헤링본 마루)	침실+거실+ 주방+복도	84A, 84C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알파룸 침실형 선택 (도어 / 벽체 추가)_원목마루, 기본 강마루 선택시	알파룸	84A, 84C	900,000	90,000	90,000	720,000	
		59A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59B	14,400,000	1,440,000	1,440,000	11,520,000	
		59C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59D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79A	21,500,000	2,150,000	2,150,000	17,200,000	
		79B	19,300,000	1,930,000	1,930,000	15,440,000	
유럽산 원목 마루 (독일산)	거실+주방+ 복도+침실	79C	20,900,000	2,090,000	2,090,000	16,720,000	
		79D	19,100,000	1,910,000	1,910,000	15,280,000	
		84A	21,500,000	2,150,000	2,150,000	17,200,000	
		84B	21,000,000	2,100,000	2,100,000	16,800,000	
		84C	21,200,000	2,120,000	2,120,000	16,960,000	
		114	29,000,000	2,900,000	2,900,000	23,200,000	
		59A	14,800,000	1,480,000	1,480,000	11,840,000	
		59B	13,000,000	1,300,000	1,300,000	10,400,000	
	기실+주방+	596 59C	13,000,000	1,300,000	1,300,000	10,400,000	
유럽산 원목 마루 (핀란드산)	기열+구당+ 복도+침실	59C 59D				10,400,000	
	7	טפכ	13,000,000	1,300,000	1,300,000	10,400,000	
		79A	19,300,000	1,930,000	1,930,000	15,440,000	

		700	17 200 000	1 720 000	1 720 000	12.040.000	
		79B	17,300,000	1,730,000	1,730,000	13,840,000	
		79C	18,800,000	1,880,000	1,880,000	15,040,000	
		79D	17,200,000	1,720,000	1,720,000	13,760,000	
		84A	19,300,000	1,930,000	1,930,000	15,440,000	
		84B	18,900,000	1,890,000	1,890,000	15,120,000	
		84C	19,000,000	1,900,000	1,900,000	15,200,000	
		114	26,100,000	2,610,000	2,610,000	20,880,000	
		59A	26,100,000	2,610,000	2,610,000	20,880,000	
		59B	22,900,000	2,290,000	2,290,000	18,320,000	
		59C	23,000,000	2,300,000	2,300,000	18,400,000	
		59D	23,000,000	2,300,000	2,300,000	18,400,000	
		79A	34,100,000	3,410,000	3,410,000	27,280,000	
유럽산 원목 마루 (이태리산)	거실+주방+	79B	30,500,000	3,050,000	3,050,000	24,400,000	
ㅠㅁ한 편국 하구 (이테니한)	복도+침실	79C	33,200,000	3,320,000	3,320,000	26,560,000	
		79D	30,300,000	3,030,000	3,030,000	24,240,000	
		84A	34,100,000	3,410,000	3,410,000	27,280,000	
		84B	33,300,000	3,330,000	3,330,000	26,640,000	
		84C	33,600,000	3,360,000	3,360,000	26,880,000	
		114	46,000,000	4,600,000	4,600,000	36,800,000	
		59A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59B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59C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59D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79A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79B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79C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79D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A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84B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C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114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59A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59B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59B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1 1				
		59D	7,200,000	720,000	720,000	5,760,000	
아트워 세라미타이		79A	9,400,000	940,000	940,000	7,520,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거실 아 <u>트월 맞</u> 은편+복도)	거실+복도	79B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 시트판넬		79C	10,600,000	1,060,000	1,060,000	8,480,000	
· 		79D	10,600,000	1,060,000	1,060,000	8,480,000	
		84A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84B	11,200,000	1,120,000	1,120,000	8,960,000	
		84C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114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59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59B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59C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주방 벽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59D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79A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79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79C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79D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84A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84C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114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59A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59B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59C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59D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79A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7 U U U U U U U U U U U	ㅈ비	79B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주방 벽, 상판 세라믹타일	주방	79C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79D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84A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84B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84C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114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114	3,300,000	330,000	330,000	2,000,000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줄조명)	주방 	59A, 59B, 59D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줄조명)	주방	59A, 59B, 59D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서재형 거실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줄조명)	주방	59C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서재형 거실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 줄조명)	주방	59C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아일랜드 미선택형)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유리선반 / 유리도어 /줄조명 적용)	주방	79A, 79B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아일랜드 미선택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유리선반 / 유리 도어 /줄조명 적용)	주방	79A, 79B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아일랜드 선택형)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유리선반 / 유리도어 /줄조명)	주방	79A, 79B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아일랜드 선택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유리선반 / 유리 도어 /줄조명)	주방	79A, 79B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79C, 79D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유리선반 /	주방	84B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유리도어 /줄조명 적용+독립형 후드 / 2구	ΤÖ						
인덕션)		114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ᄌᄟ	79C, 79D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유리선반 / 유리	주방	84B	10,100,000	1,010,000	1,010,000	8,080,000	
=		1	-,,	, - : - ,	, , 0	-,,	

도어 /줄조명 적용+독립형 후드 / 2구 인덕 션)		114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84B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PET도어 / 줄조명 적용+독립형 후드 / 2구 인덕션)	T5	114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 PET도어 /	주방	84B	9,300,000	930,000	930,000	7,440,000	
(구당 박, 당한 : 세다먹다릴 PET모에 / 줄조명 적용+독립형 후드 / 2구 인덕션)	Тё	114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유리선반 / 유리도어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씨넷)	주방	84A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 바닥 포세린 타일) *현대L&C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ΤΘ	84C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유리선반 / 유리 도어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씨넷) + 바닥 포세린 타일) *현대L&C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주방	84A, 84C	9,400,000	940,000	940,000	7,52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유리선반 / 유리도어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현대	주방	84A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L&C) + 바닥 포세린 타일) *씨넷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Το	84C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유리선반 / 유리 도어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현대 L&C) + 바닥 포세린 타일) *씨넷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주방	84A, 84C	10,300,000	1,030,000	1,030,000	8,24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PET도어 /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씨넷) + 바닥 포	주방	84A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세린 타일) *현대L&C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Τ 6	84C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PET도어 /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씨넷) +	주방	84A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바닥 포세린 타일) *현대L&C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1 0	84C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_PET도어 /	ス ル	84A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유리도어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현대 L&C) + 바닥 포세린 타일) *씨넷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주방	84C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주방 벽, 상판 : 세라믹타일_PET도어 / 유리 도어 /줄조명 적용_슬라이딩 도어(현대 L&C)	주방	84A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도어 /물소형 식용_클타이팅 도어(언내 L&C) + 바닥 포세린 타일) *씨넷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Тӧ	84C	9,600,000	960,000	960,000	7,680,000	
고급 수전	주방	전 타입	480,000	48,000	48,000	384,000	
		84A	600,000	60,000	60,000	480,000	
입식 빨래볼	발코니2	84B	300,000	30,000	30,000	240,000	
		84C	500,000	50,000	50,000	400,000	
		114	400,000	40,000	40,000	320,000	

		FOR	2 000 000	200.000	200,000	2.040.000	
		59B 59C	3,800,000 3,80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040,000 3,040,000	
		59C 59D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79B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슬라이딩 반침장	침실1	79C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79D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84A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84C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114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일반가구 반침장	침실1	59A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79A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베드핏 반침장	침실1	84B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침실2	59A·B·D, 79A·B	700,000	70,000	70,000	560,000	
일반가구 반침장 파우더형	침실3	59C, 79C·D, 84A·B·C, 114	700,000	70,000	70,000	560,000	
		59C	7,470,000	747,000	747,000	5,976,000	
	+1412	79C	8,270,000	827,000	827,000	6,616,000	
	침실2	79D, 84A·B·C	7,170,000	717,000	717,000	5,736,000	
취미방 (흡음보드)+특화조명		114	8,170,000	817,000	817,000	6,536,000	
	* IAI2	59A, 59B, 59D	7,470,000	747,000	747,000	5,976,000	
	침실3	79A, 79B	8,270,000	827,000	827,000	6,616,000	
		59A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드레스룸 특화형 (글라스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 가구)	드레스룸	79B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B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79A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드레스룸 특화형		79C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슬라이딩 도어(씨넷) + 벽판넬형 시스템 가구 *현대L&C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드레스룸	79D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전대다 마이미인의 승객인의 절기		114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79A	7,800,000	780,000	780,000	6,240,000	
드레스룸 특화형					· · · · · · · · · · · · · · · · · · ·		
(슬라이딩 도어(현대L&C) + 벽판넬형 시스템	드레스룸	79C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가구) *씨넷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79D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114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맨스케이브 드레스룸 특화형 (글라스 도어 + 3연동 슬라이딩 도어(씨넷) + 벽판넬형 시스템 가구+ 조명형 입식파우더) *현대L&C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드레스룸	84A, 84C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맨스케이브 드레스룸 특화형 (글라스 도어 + 3연동 슬라이딩 도어(현대 L&C) + 벽판넬형 시스템 가구+ 조명형 입식파우더) *씨넷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드레스룸	84A, 84C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욕실 1 특화옵션(샤워부스형)	욕실1	59A·B·C·D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1				1	

	(부부욕실)	79A⋅B⋅C⋅D, 84A⋅B⋅C, 114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욕실2	59A·B·C·D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욕실 2 특화옵션(욕조형)	욕실2 (공용욕실)	79A·B·C·D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0072)	84A·B·C, 114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O.J.	59A·B·C·D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욕실 2 특화옵션(샤워부스형)	욕실2 (공용욕실)	79A·B·C·D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0072)	84A·B·C, 114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복도 팬트리 유상옵션 (패널 확장/특수PET + 시스템가구 블랙 포스트)	복도	59C	900,000	90,000	90,000	720,000	
알파룸 중문(슬라이딩 도어) (씨넷) *현대L&C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알파룸	84B	400,000	40,000	40,000	320,000	
알파룸 중문(슬라이딩 도어) (현대L&C) *씨넷 유상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알파룸	84B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59A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59B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59C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59D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전기 조명 특화		79A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13인치 월패드 / 주방특화 / 안방(침실1) /	거실+주방+침실1	79B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거실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		79C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 , , , , , , , , , , , , , , , , , , ,		79D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84A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84B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84C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114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및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등은 천장 길이에 따라, 조명이 분절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안방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픽처레일 일체형 간접등+주방+침실1 조명이 일괄로 설치됩니다.
- •거실, 주방, 안방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기존 거실, 주방 및 안방 기본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주방, 안방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상부장 내부 일부구간에 SMPS 커버(전기 유상옵션 등기구 조작함)가 설치됩니다.
- ·타입별 조명의 설치위치 및 개소가 상이하오니 옵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상판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 84C의 경우 알파룸 바닥은 포세린타일이 적용됩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상부장 상단 또는 일부 내부 구간에 안정기가 설치됩니다.
- ·84C 현관창고에 설치되는 시스템가구에는 우산꽂이 악세서리(일반가구분)가 추가 적용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최초 계약시)	562166-86-198073	- 신한은행	현대건설(주)
구기 선택품축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 140-014-332668 / 예금주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상 선택품목

품 목	적용실	주택형
주방가구 도어 마감 칼라 선택제	주방	전 평형
파우더장 선택제 (좌식/입식)	침실1 드레스룸	59A, 79A, 79C, 79D, 84A, 84B, 84C, 114
욕실2 선택제 (욕조형/샤워부스형)	욕실2	전 평형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입주자 사전방문은 실입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사전방문안내문 발송 ⇒ ②입주자 현장 도착 ⇒ ③접수, 교육 안내 ⇒ ④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점검표 제출 ⇒ ⑥입주 전 보수 완료 ⇒ ⑦보수 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시 상태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 입주예정일: 2027년 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2.02.2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차로 부분): 지하 1~2층 2.7M 이하 / 지하3층 2.3M 이하
-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키즈플레이룸,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피트니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 ㆍ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기본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주택' 교로 표시방법을 명한 대신 불이료시 행정 단위인 제공비터(m)로 포기하였으나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주택 교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석(선용면적, 추가용용면적) 기준에서 추가전용면적면을 포기하도록 변성되었으며, 주택된 신청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학명표 포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석(선용면적, 추가용용면적) 기준에서 추가전용면적면을 포기하도록 변성되었으며, 장후 인소하기 대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보도로 공 정벽교통방은 경기가진, 지방되지전체에서 계절하여 전쟁하는 시험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제품시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다 원보도로 공 경역교통방은 기가진, 지방되지전체에서 계절하여 전쟁하는 시험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제품시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다 아마트의 특성성 중간, 세대간, 용도별 소료계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트의 특성성 중간, 세대간, 용도별 소료계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트의 특성성 중간, 세대간, 용도별 소료계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내의 현성을 필청 방문하시어 주변인함 및 현상에건, 주반계방,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동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에시기 바라며 미화인에 따른 이명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내의 현성을 필청 방문하시어 주변인함 및 현상에건, 주반계방,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동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에시기 바라며 미화인에 따른 이명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데당 시작반역적 및 대지자분은 인하가 과정, 병생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편적 및 대지지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원이 여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도 하며, 허용요자를 조과하는 공장인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동기부등은 상의 면역자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성을 정산이기로 합니다. 및 소설 등에 반면된 등행 등행 등에 다양한 출신들을 고려하여 착정한 금액으로 타입될 공고가격의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원, 동병, 충병 등이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착전을 금액으로 타입된 공고가격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무체 역단적 외의 근원생회시설 등의 비우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구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력(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원생회시설 등의 비우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구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력에서 내립 대지지보는 공자들이의 등 대지자분을 주역함을 권용받면 함한 대자면적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력에서 내립 대지지보는 공무적의의 등 대지자분을 구역함을 권용받으로 만한 대지면적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력에서 대립 대지지보는 공무적의의 등 대지자분을 구역함을 계원 용면적 비용에 따라 배하였습니다 사업무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압구자의 원활한 업주 업무 기관 보증한 하면 가장의 보증하여 가장을 보면하여 가장을 보내하면 보내한
입주절차	•계약자는 공급금액 및 연체료 등 일체의 납부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선수관리비)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입주증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 표제부의 공급금액 총액의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고, 나머지 10%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해당 기간 내 나머지 10%의 금액을 미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2024.02.28. 일자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주체와 계약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일반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계약자가 시공자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설계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컬러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일반

- •도심경관의 역사·문화성 강조를 위하여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역사문화시가지권역 경관계획 기준으로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ㆍ사용승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집적소,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융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주변현황/ 단지배치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계약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흥덕초등학교(101동~117동) 및 한벌초등학교(201동~209동) 배치 가능(단,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결과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됨), 중학생은 2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청주시 및 도 내 전체 고등학교에 지원분산 배치가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조건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과)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은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외부 레벨차 극복을 위해 경계부에 일부 설계 변경(외부계단, 토목 옹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11동 1층 세대창과 데크 난간 간섭으로 인해 추후 데크라인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ㆍ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식재가 계획되지 않아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는 관련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옹벽라인 및 계단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외부 레벨차이로 인한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동 ELEV 기계실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용화사, 무심천, 편의시설, 인접 건물, 학교, 혐오시설 등)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함, 실외기 설치위치와 인접한 세대는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설치위치, 크기, 형태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화재 완충공간의 식재 조성계획 및 레벨등은 인허가 및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화재 완충공간의 식재 조성 및 용화사 건물에 의해 동별,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207동 어린이집에 면하여 유아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훼룸/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도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여성전용,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한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홈,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넼보강은 제외합니다.
- ㆍ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 1층~2층 주차장 차로 높이 2.7m(주차공간 2.1m 이상) 출입구 높이 2.7m
- 지하 3층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출입구 높이 2.3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홐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의 형태 및 디자인,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유입 대책을 위해 창 및 문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 보행진입 개선을 위해 램프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주동/

공용부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A블럭 지하주차장(지하2층 휀룸#2, #7, #9, #10, #12 등), 지상층 및 102동, 104동, 106동, 108동, 116동, 117동 지붕층, B블럭 지하주차장(지하2층 휀룸#1, #4, #9 등), 지상층 및 202동, 204동, 206동, 207동, 209동 지붕층에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어, PC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계약서 상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워형 매입등 ω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 및 창프레임 노출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방기능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세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ㆍ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또는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C타입 평면선택제 '서재형 거실'(유상옵션)을 선택할 시 가구와의 간섭으로 픽쳐레일 일체형 조명의 설치가 불가하여 조명 유상옵션을 함께 선택하게 될 경우 '픽쳐레일 일체형 조명'은 제외됩니다.
- •평면선택제 '취미방'(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마감재 특성에 의한 두께로 인하여 침실 사이즈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일부타입의 공간 형태에 따른 단차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평면선택제 "취미방"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의 경우 목창호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으며, 목창호 도어의 규격이 작아질수 있습니다. 목창호 하부의 하드웨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실1(안방)에 설치되는 슬라이딩 반침장(유상옵션)은 방의 형태에 따라(일부타입 2면 개방형)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A, 59A, 59B, 59D, 84C 타입의 경우 냉장고장 기본 사이즈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설치되는 가구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상이한 사이즈의 욕실 계획으로 벽, 바닥의 타일 와리도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쪽타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깊이가 세탁기(가전)보다 얕거나 세탁수전 설치로 인하여 세탁기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및 일부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의 패턴은 나누기,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또는 분절 부분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공구별(시공사별) 시스템가구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내 하드웨어 형태 및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문 설치에 따라 신발장 내부 길이 및 구성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84C 타입의 신발장 내부 구성은 기타 타입과의 신발장 구성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취미방" 유상옵션 평면선택제 선택 시 실내 완벽 차음 및 방음은 불가하며,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실내 소음관련,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평면선택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 ㆍ평면선택제 선택 시 일부타입의 경우만 그랜드아일랜드 상판에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확장 시 주방가구 상판에는 콘센트가 제외되는 아이템이니,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침실1(안방)에 설치되는 파우더장은 방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안방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상부장 내부 일부구간에 SMPS 커버(전기 유상옵션 등기구 조작함)가 설치됩니다.
- 가전/가구 선택형에 따라 가구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상부장 상단 또는 일부 내부 구간에 안정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현관문폭 사이즈가 상이하오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범위는 세탁기 설치공간 확보, 벽체 및 도어 간섭 개선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세대단자함이 통합 또는 개별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거치대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 식탁에 쿡탑 및 후드가 설치되는 경우 가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주방가구 상부에 가스배관 또는 벨브의 가림막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비내력 벽체는 ALC블릭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에는 0.5m'미만의 작은창이 설치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84C타입 침실2 문의 위치는 거실면쪽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방발코니 세탁단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벽체 결로방지를 위해 일부벽면에는 결로방지단열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창호 위치 및 창호프레임 노출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X 기타사항

■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적용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설기준 지침)

- •목적 : 이 지침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 상기 적용범위에 의한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 가족 중 ①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②청각장애인, ③시각장애인, ④만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적용합니다.

구분		제공 대상	
현관	마루 굽틀 경사로	•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 3급이상 지체장애인
연선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 3급이상 지체장애인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추후 물넘침 등의 부가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미끄럼방지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일반세대에 적용하는 바닥타일 마찰계수 이상의 제품을 적용)	- - 고령자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	·출입구의 폭 80cm이상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3급이상 지체장애인
	개폐방향 변경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 → 밖여닫이) *도어스토퍼 미시공	
	좌식샤워시설	•욕조 제거후 샤워공간 확보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2개, —자형 1개)	
주방	좌식 주방 싱크대	•의자 사용이 가능한 씽크대(물버림대)를 설치 ※온수분배기 위치 이동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분 주방가구를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음	• 3급이상 지체장애인
	가스밸브 높이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 3급이상 지체장애인
	비디오폰 높이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	• 3급이상 지체장애인
거실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야간 센서등	•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3급이상 지체장애인
조도 투구 오드 내성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주동입구에 설치	. 117t7t0UOI
주동·통로 유도시설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 현관 입구의 램프난간, 계단난간, 내부 경사로 난간에 점자스티커 부착	- •시각장애인

※향후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며, 전매 시에도 상기 사항이 같이 포함됩니다. ※입주민의 편의상 타 세대와 달리 시공이 상이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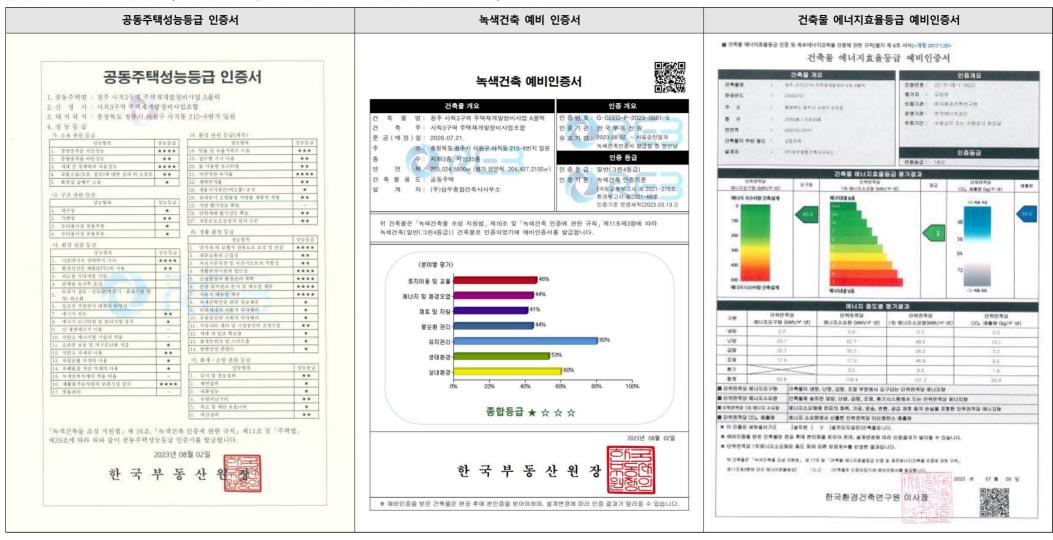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2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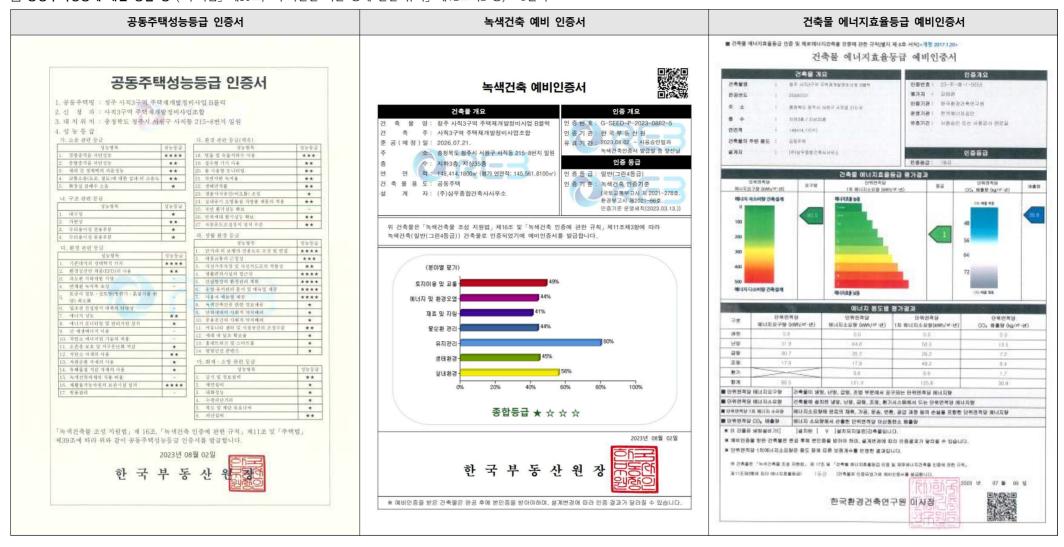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담	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등 (「주택법」제39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 등) - B블럭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 VII-0.22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12024-101-0000400호	502,376,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동우이앤씨	신원기술단	아이비엔지니어링	아이비엔지니어링
금액	8,659,817,527	1,192,250,000	354,750,000	827,750,000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	공사
상호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주)	금호건설(주)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58, 2층 (사직동,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4 (계동, 현대빌딩)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법인등록번호	150171-0010304	110111-0007909	110111-0134877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hillstate.co.kr/s/chs

■ 견본주택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

입주자 모집공고		2024.02.28.(수)	흥덕대교
특별공급		2024.03.04.(월)	흥 <mark>덕</mark> 초 흥덕사거리 _{제1운천교}
1순위		2024.03.05.(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8 성공
일반공급	2순위	2024.03.06.(수)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세육공원
당첨자발표		2024.03.13.(수)	• 청주공업고 ************************************
계약체결		2024.03.24.(일) ~ 2024.03.27.(수), 4일간	사직두산위브 더제니스 한벌초 청주대교 아홈플러스
분양문의 12 043-269-4535		총 2,330세대 중 일반분양 1,675세대 [59m²A·B·C·D, 79m²A·B·C·D, 84m²A·B·C, 114m²]	청주여중